

1. 「特殊建物の割引料率規程」適用指針

'82年 12月 3日 改正된 「特殊建物の割引料率規程」(防火情報 第22號에 掲載) 중 適用上 混亂이 惹起될 수 있는 部分에 대한 改正 趣旨를 紹介함으로써 點檢實務에 適用時 統一을 기할 수 있도록 그 指針內容을 掲載한다.

가. 防火區劃

(1) 延面積 1,000 m² 이상의 建物

(가) 建築年度에 關係없이 區劃對象面積 및 層을 固定시킴.

○ 面積別 區劃: 1,000 m² 이내 및 11層 이상의 層에 있어서는 200 m² (또는 500 m²) 이
내마다 區劃

○ 層別 區劃: 3層 이상의 層 및 地下層에 있어서는 層마다 區劃

○ 用途別 區劃: 建築法 17條에 該當하는 建物の 用途部分과 其他部分

(나) 防火區劃割引 趣旨에 따라 建築法上 緩和規程은 適用치 아니함.

○ 自動式 消火設備를 設置한 部分의 區劃面積 3倍數 緩和規程 (消火設備 割引規程이 있으므로 二重 割引惠澤을 排除함).

○ 用途上 不可避한 境遇의 防火區劃 排除規程

(다) 建物 主要構造部에 관계 없이 防火區劃 基準을 統合함.

○ 複合構造 (例: 木造 + R·C造) 建物の 境遇 등을 勘案

따라서 모든 建築物에 있어서 建物面積 및 層數의 規模와 用途에 따라 (가)項의 區劃條件에 適合한 境遇 防火區劃割引이 可能함.

(2) 그 밖의 建物

(가) 2個의 分室 概念을 設定: 建物の 各部分이 1/2 내지 1/3로 防火區劃되어야 割引이 可能함.

(나) 建築法 17條에 該當하는 用途의 部分을 갖는 建物の 境遇: (가)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建築法 施行令 30條 ③項에 따라 適合하게 區劃되면 割引이 可能함.

나. 避難設備

(1) 割引 前提條件 設定

○ 直通階段이 避難階段 또는 特別避難階段 構造인 建築物에 局限함.

○ 前提條件에 未達하는 建物は 他避難設備가 良好하여도 割引이 不可能함.

(2) 其他 必要한 避難設備의 種類를 明示: 其他의 避難設備는 建物の 規模 또는 用途에 따라 設置對象인 境遇에만 適用하고, 非對象인 것은 判定基準에서 除外함.

○ 複道, 出口

○ 屋上廣場, 헬리포르트

○ 誘導燈, 誘導標識